

의안번호	2201908
의 퇴 인	신성범 의원
회 답 일	2024. 8. 1.
추 계 번호	24C1996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7년 연장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,578억원, 2031년 1,279억원 등 2025~2031년 7년간 총 9,969억원(연평균 1,424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31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	1,578	1,524	1,471	1,421	1,372	1,325	1,279	9,969	1,42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법률 제8541호 부칙안 제7조(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)	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50%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	의무규정
2	법률 제11143호 부칙안 제7조(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)	사업장가입자인 농어업인 또는 사업장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50%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법률 제8541호 부칙 안 제7조(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)	○	과거 지원 대상자 수 및 지원액 추세를 고려하여 추계
2	법률 제11143호 부칙 안 제7조(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)	○	과거 지원 대상자 수 및 지원액 추세를 고려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추계기간의 월별 지원 대상자 수 및 1인당 지원 단가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평균 지원자 수와 1인당 평균 지원 단가가 2024년 유지되고, 이후에는 2021~2023년의 연평균 변동률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
 - 2023년 7월 1일부터 농어업인 제외 기준 중 재산 기준이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변경¹⁾되었으므로, 2023년 7월 이후의 대상자 수와 지원 단가 자료를 활용하여 2024년 대상자 수 및 지원 단가를 산정
 -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월평균 지원자 수는 감소한 반면, 평균 지원 단가는 증가한 추세가 추계기간 지속된다고 가정
 - 단, 가입유형(지역가입자, 사업장가입자)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자 수 및 1인당 평균 지원 단가를 산출하여 추계
- 개정안은 지원 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7년으로 함

1) 「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10호, 2020. 6. 30.)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기한을 2031년까지 7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- 현행법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를,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 중
 -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2억원 미만인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월 보험료가 92,700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46,350원을 정액 지원하고, 월 보험료가 92,700원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보험료의 1/2를 정률 지원

□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농어업인 수 및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2024년 월 평균 지원자 수 및 1인당 평균 지원 단가를 산정한 후, 2021~2023년의 실적치 변동률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월 평균 지원 대상자 수와 지원 단가를 산출

[표 2]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현황

(단위: 명, 원, %)

구 분	2023년						월 평균
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
월 지원자 수	306,257	309,023	305,458	310,937	308,624	305,122	307,570
1인당 평균 지원 단가	44,236	44,261	44,275	44,289	44,293	44,330	44,281

자료: 농림식품축산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[표 3]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현황

(단위: 명, 원, %)

구 분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가율
월 평균 지원자 수	338,759	323,805	307,688	-4.7
1인당 평균 지원 단가	43,068	43,397	4,409	1.3

자료: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- 추계결과,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7년간 총 9,969억원(연평균 1,424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31년

(단위: 명, 원,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월 평균 대상자 수(A)	293,125	279,359	266,240	253,736	241,820	230,463	219,640	-	-
1인당 평균 지원 단가(B)	44,864	45,454	46,053	46,659	47,273	47,895	48,526	-	-
추가재정소요 (A×B×12개월)	1,578	1,524	1,471	1,421	1,372	1,325	1,279	9,969	1,424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